

#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4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강동길, 김경영,  
김경우, 김인제, 김제리,  
김혜련, 김화숙, 문병훈,  
박기열, 박기재, 송아량,  
우형찬, 이경선, 이병도,  
이상훈, 이승미, 이정인,  
임종국, 장인홍, 정진철,  
조상호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어린이 통합버스의 과도한 썸팅으로 인하여 하절기 버스 이용아동의 사망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, 질식사고 예방 등 어린이 통합버스 이용 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켜야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5조제3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,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실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